

환경부 고시 제2023-211호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부분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중 일부 세부기준(코드) 개정 및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1. 기준명 :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2. 구 분 : 세부기준(코드) 제정 및 일부 개정

- 제 정 : KCS 51 70 10 하천 정화시설
KCS 51 70 20 하천 복원공간 및 시설
KCS 51 80 10 하천 친수시설
- 일부 개정 : KCS 51 10 05 하천공사 일반사항
KCS 51 10 10 하천가설공사
KCS 51 10 15 하천 토공사
KCS 51 10 20 하천콘크리트공사
KCS 51 10 25 하천블록공사
KCS 51 40 05 하천 보
KCS 51 40 10 하천어도
KCS 51 40 15 하천 취수시설
KCS 51 40 20 하천 주운시설
KCS 51 60 05 하천제방
KCS 51 60 10 하천 호안
KCS 51 60 15 하천 수제

KCS 51 60 20 하천 하상유지시설
 KCS 51 60 23 하천 하상정리공사
 KCS 51 60 25 하천 수문
 KCS 51 60 26 하천 통문
 KCS 51 60 30 하천 내수배제시설
 KCS 51 60 32 하천 저류시설
 KCS 51 60 35 하천사방공사
 KCS 51 60 40 하천하구공사
 KCS 51 90 05 하천 수로터널
 KCS 51 90 10 하천세굴방지공사

3. 목 적

- 기후 변화 및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한 '18년 하천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하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 현행 기준에 대한 기술현행화 및 관련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수정·보완

4. 주요내용

- (일반사항) 기존 일반사항 내용을 대폭 변경하고, 대부분 공종에서 필요한 품질, 자재, 환경관리 등을 추가하여 작성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일반 사항	하천공사 일반사항	타 시방서 내용을 고려하여 공통내용 정리	·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신설) · 품질관리 일반사항(신설) · 자재관리 일반사항(신설) · 환경관리 일반사항(신설)

- (이수시설공사) 설계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이수 시설 공사	보	설계기준 반영	· 설계기준 적용 : 용어정의(보 등), 부대시설공 추가 · 참고기준 추가 : 농업생산기반시설 추가
	어 도	내용 추가	· 시공기준 추가 : 위치, 길이, 출구 등 일반내용 추가
	취수시설	설계기준 반영	· 설계기준 적용 : 취수고, 집수암거 등 추가
	주운시설	내용 추가	· 재료 및 시공내용 추가 : 공종별 내용 및 시공기준 추가

○ (치수시설공사) 통문 및 저류시설 신설하고, 설계기준 변경 반영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치수 시설 공사	제 방	설계기준 반영	· 설계기준 적용 : 용어정의, 다짐 등 변경 · 코드 설명 및 문구 수정
	수 제	설계기준 반영	· 설계기준 적용 : 석재쌓기 수제공 추가 · 코드 설명 및 문구 수정
	하상유지 시 설	설계기준 반영	· 설계기준 적용 : 차수벽, 물받이공, 연결옹벽 및 밑다짐,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등 추가 · 용어추가 : 하상유지시설, 환경사낙차공 등
	하상정리 공 사	내용 추가	· 준설장비 추가 : 굴삭기 준설, 버킷휠 준설 등 · 시공기준내 준설 심도 등 추가
	수 문	문구 수정 등	· 건설기준 코드 설명
	통 문	신설	· 내용 신설
	내수배제 시 설	설계기준 반영	· 설계기준 적용 :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 추가
	저류시설	신설	· 내용 신설
	사방시설	문구 수정 등	· 건설기준 코드 설명
	하구공사	문구 수정 등	· 건설기준 코드 설명

○ (환경시설공사) 하천정화 시설 및 복원시설 신설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하천 환경시설 공사	정화 시설	신설	· 인공습지, 끈상접촉산화, 인공 식물섬, 침투시설, 식생수로, 식생 여과대 등 추가
	복원공간 및 시설	신설	· 자연형 하상유지시설, 여울과 소, 하천생태통로, 하중도 등

○ (친수시설공사) 친수시설공사 신설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하천친수 시설공사	친수 시설	신설	· 시설 : 보행로, 자전거도로, 생태학습시설, 공원시설, 수상레저 시설, 생활 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오토캠핑장 등

○ 기타시설공사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기타 시설	수로터널	내용 추가	· 터널굴착, TBM, 터널 지보재, 터널 라이닝, 배수공, 계측 등 내용 추가
공사	하천세굴방지공	내용 추가	· 사석보호공 추가

5. 관련단체 : (사) 한국수자원학회 ☎ 02-561-2732

(사) 한국하천협회 ☎ 02-565-7962

6.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발주되는 신규사업에 적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하천계획과(044-201-7608) 또는 한국수자원학회(02-561-2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